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169호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호)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할랄·유기농화장품 또는 그 밖의 화장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357호)됨에 따라, 이에 따른 화장품의 인증·보증기관에 대한 신뢰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1) 식약처장은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등)
- 2)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5조)

나.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신청, 검토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1)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보증 등의 신뢰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제8조)
- 2)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에 관한 사항(제9조)
- 3) 심의 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보증기관 신뢰성 인정증서 교부, 공고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3. 의견 제출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참조: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6, 팩스: 043- 719-3400, 전자우편: ljh20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호

「화장품법」 제13조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른 화장품에 대한 인증·보증의 표시·광고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광고할 수 있는 인증·보증의 종류) ①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이하 “화장품”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표시·광고할 수 있는 인증·보증(지정·공인·추천·상훈 등의 유사한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할랄(Halal)·코셔(Kosher)·비건(Vegan) 및 천연·유기농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그 밖에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보증
 2.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ISO 22716 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그 밖에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보증
 3.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받은 기관에서 받은 인증·보증
 4. 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인증·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기관에서 받은 인증·보증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뢰성을 인정받은 인증·보증기관(이하 “인증·보증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은 인증·보증은 화장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기준)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인증·보증은 이 고시에 따른 신뢰성을 인정받지 않고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법령에 따라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보증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인증·보증기관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 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제8조에 따라 인정 신청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및 인증·보증의 실적에 관한 사항
2. 인증·보증기관 또는 인증·보증의 신뢰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식약처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관련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2.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
3. 기타 식약처장이 화장품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등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신청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식약처장의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공정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식약처장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식약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식약처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인정 신청) 화장품에 대한 인증·보증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인증·보증을 표시·광고에 활용하려는 자 및 관련 전문단체·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절차, 인증기준·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서류
2. 인증·보증기관의 인력 및 규모, 운영기준 등에 관한 서류
3.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인증·보증 업무 수행실적

제9조(신청 검토) ① 식약처장은 제8조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인증·보증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 등 형식요건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제출 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기관에서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식약처장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검토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현장실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검토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보완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완자료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를 따른다.

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제5항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신청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 서류에 허위·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인정이 불가하거나 그 인정 효력이 없음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인정 및 공고) ① 식약처장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 신뢰성 인정증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정번호
2. 인정일자
3. 인증·보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4.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 종류

제1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표시·광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되고 있는 인증·보증 등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보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 서식]

화장품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인증·보증의 종류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자격요건(제8조 관련)		<input type="checkbox"/> 해당 기관 <input type="checkbox"/> 표시·광고에 활용하려는 자 <input type="checkbox"/> 전문단체·기관		
설립 근거법				
설립 연월일				
<p>「화장품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라 화장품에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인증·보증 등의 신뢰성 인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p>				
구비서류				
<p>1. 인증절차, 인증기준·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서류</p> <p>2. 인증·보증기관의 인력 및 규모, 운영기준 등에 관한 서류</p> <p>3.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인증·보증 업무 수행실적</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심의결과보고서
<p>심의안건 : <input type="checkbox"/> 표시·광고 인증·보증 등의 신뢰성 인정 <input type="checkbox"/> 표시·광고 인증·보증 등의 신뢰성 인정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p> <p>- 신청기관명 :</p> <p>- 인증·보증의 종류 :</p> <p>심의결과 :</p>
<p>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원장 : (서명)</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화장품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증서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보증의 종류 :

「화장품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라 화장품에 인증·보증 표시·광고의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광고 인증·보증 등의 신뢰성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변경사항

일 자	내 용